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류영수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010-35

발의연월일: 2010. 9. .

발 의 자: 류영수·강창남·강철우

안철우·조선제·조기원 백범영·이성복·김재권

이애숙 의원

(10인)

1. 제안이유

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을 신설하고, 행정사무 감사의 실시시기와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, 증인 선서의 방식 및 실비 보상 지급에 관한 준용 규정 등을 명확히 하며, 그 밖에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의 순화 및 띄어쓰기를 하거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이해하기 쉽고 논리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조항을 간명화 함(안 제1조).
- 나. 행정사무 감사의 실시 시기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으로 명확히 규정함 (안 제2조제2항).
- 다.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을 신설·추가하되, 출자·출연법인에 대하여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경우로서 군의 출자 또는 출연

에 관련된 업무·회계·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하도록 함(안 제5조제1항 제4호·제6호 신설).

- 라.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를 명확히 규정함(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).
 -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와 위임받아 처리 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함
 -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실시함
- 마. 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한 준용 규정을 관계 법령에 맞게 「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로 변경함(안 제9조제5항).
- 바.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·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한 실비 보상 지급에 관한 준용 규정을 의회소관 조례인 「거창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함(안 제9조의3제3항).
- 사. 그 밖에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의 순화 및 띄어 쓰기를 하거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고 논리에 맞게 정비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, 제41조, 제42조, 제146조
- 2)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, 제56조
- 3) 「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
- 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- 다. 신구조문대비표: 붙임
- 라. 기타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1조 중 "「지방자치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"를 "「지방자치법」"으로, "거창군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(이하 "감사"라한다)와 행정사무조사(이하 "조사"라 한다)"를 "거창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"로, "절차 기타"를 "절차와 그 밖에"로 한다.

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정례회 기간중"을 "제2차 정례회 기간 중"으로, "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"를 "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(이하 "감사위원회"라 한다)로, "승인을 얻어"를 "승인을 받아"로, "행한다"를 "한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기재하여야"를 "적어야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이를 승인하거나"를 "승인하거나"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"승인된 때에는"을 "승인되면"으로, "지체없이"를 "지체 없이"로, "이를 통지하여야"를 "통보하여야"로 한다.

① 거창군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는 거창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의 사무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(이하 "감사"라한다)를 실시한다. 다만,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하게 할 수 있다.

제3조제1항 중 "행정사무중"을 "사무 중"으로, "조사를 행할"을 "행정사무조사(이하 "조사"라 한다)를 할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"을 "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"으로, "조사를 시행할"을 "조사를 하게 할"로, "기재하여"를 "적어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의장은"을 "의회는"으로, "지체없이"를 "지체 없이"로, "조사를 시행할 특별

위원회(이하 "조사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한다"를 "조사를 하게 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넘겨 조사를 하게 할 위원회(이하 "조사위원회"라 한다)를 확정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"를 "폐회 중이거나 휴회 중인 경우에는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있으면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"기재한"을 "적은"으로, "제출하여 승인을 얻어"를 "제출하고 그 승인을받아"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"이를 승인하거나"를 "승인하거나"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중 "승인된 때에는"을 "승인되면"으로, "즉시"를 "지체없이"로, "이를 통지하여야"를 "통보하여야"로 한다.

제4조 중 "의원이"를 "의원은"으로, "조사를 함에 있어"를 "조사를 할 때에"로, "필요한 때에는"을 "필요하면"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각호"를 "각 호"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"당해 지방자치단체"를 "군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"법"을 "「지방자치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"로, "당해 지방자치단체"를 "군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5호(종전의 제4호) 본문 중 "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"을 "법 제104조제2항과 제3항"으로, "사무를 제외한다"를 "사무는 제외한다"로 하며, 같은 항 같은 호 단서 중 "경우에 한한다"를 "경우만 해당한다"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"을 "사무에도 해당하면"으로, "조사함에 있어서"를 "조사할 때에"로 한다.

- 4. 군이 설치한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
- 6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. 다만,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·회계·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.

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

- "사무에 한한다"를 "사무만 해당한다"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"있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"를 "있는 경우는 제외한다"로 한다.
- ① 감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군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와 법 제41조제3항에 규정된 군 및 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.)
- ② 조사는 군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실시한다.

제7조 중 "이의 검토 후"를 "이를 검토한 다음"으로, "연장 또는 단축"을 "연장하거나 단축"으로 한다.

제8조 중 "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"을 "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"으로, "아니된다"를 "아니 된다"로 한다.

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"을 "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을 하면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"「형사소송법」 제157조의 규정을"을 "「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를"로 한다.

-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군수,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자의 출석·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·서류제출일・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,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 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·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. 이 경우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부과하되,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

제9조의2 중 "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·답변하게 할 때에는"을 "관계 공무원을 출석·답변하게 하려면"으로, "명시한"을 "밝힌"으로, "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 개시전까지"를 "본회의나 그 위원회의 회의 시작 전까지"로, "통지하여야"를 "알려야"로 한다.

제9조의3제1항 중 "응하지"를 "따르지"로, "본회의 또는 위원회"를 "본회의나 위원회"로, "금지시키거나"를 "금지하거나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중 "요구한 때에는"을 "요구하면"으로, "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"을 "승인을 받아 내줄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법 제41조제4항"을 "제9조제1항"으로, "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「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"를 "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는 「거창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」로 정하는 바에 따라"로 한다.

제10조 중 "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,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"를 "감사나조사는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"로, "기타의"를 "그 밖의"로 한다.

제11조 본문 중 "감사 또는 조사는"을 "감사나 조사는"으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"본회의,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"를 "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"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"기할"을 "꾀할"로, "사유가 있는 경우에는"을 "사유가 있으면"으로, "사안에 한하여 본회의, 감사 또는 조사에"를 "사안에 대한 감사나 조사에는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"을 "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"으로, "당해"를 "해

당"으로, "감사 또는 조사를"을 "감사나 조사를"로, "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"를 "다른 의원에게 감사하게 하거나 조사하게"로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당해"를 "해당"으로, "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"를 "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따른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사안에 한하여 본회의,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"를 "사안에 대하여만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"로, "감사또는 조사를"을 "감사나 조사를"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"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"을 "의원은 감사나 조사를 하려는 때에는"으로, "저해되거나"를 "방해되거나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의원 및 사무보조자"를 "의원과 사무보조자"로, "감사 또는 조사"를 "감사나 조사"로, "알게된"을 "알게 된"으로, "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"를 "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"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"본회의,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"를 "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나 조사를 끝내면 그 위원회"로, "지체없이"를 "지체 없이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기재하고"를 "적고"로, "첨부하여야"를 "붙여야"로 하며, 같은 조제3항 중 "위원장으로 하여금"을 "위원장에게"로 한다.

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제2항에 따라"로, "지체없이"를 "지체 없이"로 한다.

② 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군이나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시정을 요구하고, 군이나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이나 해당 기관으로 이송한다.

제16조 중 "주의의무에"를 "주의 의무를"로, "「거창군의회 회의규칙」에"를 "「거창군의회 회의규칙」으로"로 한다.

제17조 중 "본회의,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, 운영등에"를 "감사 또

는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"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	제1조(목적) 「지방자치법」
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1조 및 같은	
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<u>거창군의회</u>	<u>거창군의회가</u>
(이하 "의회"라 한다)가 행하는 행정사	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
무감사(이하 "감사"라 한다)와 행정사무	
조사(이하 "조사"라 한다)에 관한 절차	<u>절</u> 차와
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	그 밖에
한다.	
제2조(감사) ① 의회는 군의 행정사무	제2조(감사) ① 거창군의회(이하 "의
에 관하여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게 하	회"라 한다)는 거창군(이하 "군"이라
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구성하여 행	한다)의 사무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소
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본회의 의결로	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(이하
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(이하 "감사위	"감사"라 한다)를 실시한다. 다만, 본회
	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
	사를 하게 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례회 기간중	
7일 이내로 실시하되, 본회의나 상임위	
	또는 특별위원회(이하 "감사위원회"라
의의 <u>숭인을 얻어</u> 확정된 감사계획서에	
	<u>한다.</u>
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, 감사위원	
회의 편성, 감사요령, 감사장소 등 감사	
에 필요한 사항을 <u>기재하여야</u> 한다.	
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	
토한 다음 의결로써 <u>이를 승인하거나</u>	
	 F
⑤ 의회의장(이하 "의장"이라 한다)은	
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	
<u>지체없이</u> 군수에게 <u>이를 통지하여야</u> 한다.	<u> </u>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조사)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	제3조(조사) ①
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	
의결을 거쳐 군의 <u>행정사무중</u> 특정 사	<u>사무 중</u>
안에 관하여 <u>조사를 행할</u> 수 있다.	행정사무조사(이하 "조사"라
	한다)를 할
② <u>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</u> 조사의 목적,	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
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	조사를 하게 할
위원회 등을 <u>기재하여</u> 발의 의원이 연	<u>적어</u>
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	
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	③ 의회는
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	지체 없이 조사를 하게 할
할 특별위원회(이하 "조사위원회"라 한	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
다)를 구성한다.	원회에 넘겨 조사를 하게 할 위원회(이
	하 "조사위원회"라 한다)를 확정한다.
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	④ 폐회 중이거나 휴회 중인 경우
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	에는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있으면
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.	
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, 조사할	
사안의 범위, 조사방법, 조사일정, 소요	
경비 등을 <u>기재한</u>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	<u>적은</u>
<u>제출하여 숭인을 얻어</u> 조사를 실시한다.	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
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	6
	<u>승인하거나</u>
반려한다.	
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	
	<u> </u>
<u>통지하여야</u> 한다.	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사무보조자) 의원이 감사 또는	제4조(사무보조자) 의원은
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	조사를 할 때에 필요하면
<u>때에는</u>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	
수 있다.	
제5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) ① 감	제5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) ①
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<u>각호</u>	<u>각 호</u>
와 같다.	
1. 당해 지방자치단체	1. <u></u>
2.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	2. 「지방자치법」(이하"법"이라 한다)
정에 따른 <u>당해 지방자치단체</u> 의 소속	
행정기관과 법 제117조와 제120조에	
따른 하부행정기관	
3. (삭제 1994.9.12 조례 제1331호)	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4. 군이 설치한 법 제146조에 따른 지
	방공기업
4. <u>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</u> 에 따라	5. 법 제104조제2항과 제3항
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(지방자치단체에	
위임 또는 위탁된 <u>사무를 제외한다</u>)를	<u>사무는 제외한다</u>
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. 다만, 본회의	
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	<u>경우만</u>
한한다.	해당한다.
<신 설>	6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7조의3에 따른
	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
	또는 출연법인 중 군이 4분의 1 이상
	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. 다만, 본회의
	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
	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
	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.
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	2
사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	
체의 <u>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</u> 이를	<u>사무에도 해당하면</u>
감사 또는 <u>조사함에 있어서</u> 그 지방자치	조사할 때에
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.	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) ①	제6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) ①
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	감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군의 사무범
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	위 내의 사무와 법 제41조제3항에 규
대하여 실시한다.	정된 군 및 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
② 법 제41조제3항에 규정된 지방자치	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
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	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
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	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.
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	② 조사는 군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
제외하고는 감사를 행할 수 있다. 이	관하여 실시한다.
경우 국회와 도의회는 감사결과에 대하	
여 군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 할 수	
있다.	
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무는 의회구성	3
일 이후 처리되는 <u>사무에 한한다</u> . 다만,	<u>사무만 해당한다.</u>
의회구성일 이전에 처리된 사무라 하더	
라도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된 사무와	
계속성이 있는 등 관련이 <u>있을 경우는</u>	<u>있는 경우는</u>
그러하지 아니하다.	제외한다.
제7조(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) 본회의	제7조(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)
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	
<u>이의 검토 후</u>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	이를 검토한 다음
활동기간을 <u>연장 또는 단축</u> 할 수 있다.	<u>연장하거나 단축</u>
제8조(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) 감사 또	제8조(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)
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	
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	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
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	
아니된다.	<u>아니 된다.</u>

혀 햀 개 정 안

제9조(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) ① 법제9조(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) ① 감사 제41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및 서류의 제출이나 군수 및 관계공무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 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군수 또는 석, 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그 현지 확인일, 서류 제출일, 출석일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 하여야 하다.

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 우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 나 군수,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 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ㆍ서류 제출일·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 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및 관계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, 관계 공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법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, 증언이나,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제출하여야 한다.

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 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 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③ 제1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 있어야 한다.

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부과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하되.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"별표"와|증언을 거부하면 법 제41조제5항에 따 같으며,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「거창군 재무회계규칙」을 준용한다. 수 있다. 이 경우 과태료는 의장의 통 이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보 등으로 군수가 부과하되.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

현 행	개 정 안
④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	4
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	
며,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	
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	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을 하면
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.	
⑤ 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<u>「형사</u>	⑤ <u>「국회</u>
소송법」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	에서의 중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」
	제8조를
제9조의2(대리 출석·답변 등) 군수는	제9조의2(대리 출석・답변 등)
법 제42조제2항 단서에 따라 <u>관계 공</u>	<u>관계</u>
무원으로 하여금 출석·답변하게 할 때	공무원을 출석·답변하게 하려면
<u>에는</u> 그 이유를 <u>명시한</u> 서면으로 <u>본회</u>	<u>밝힌</u> <u>본회</u>
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 개시전까지	의나 그 위원회의 회의 시작 전까지
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<u>통지</u>	<u>알려야</u>
<u>하여야</u> 한다.	
제9조의3(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)	제9조의3(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)
① 의회에서 증언・진술하는 증인・참	
고인이 방송·보도 등에 <u>응하지</u> 아니한	
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	
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	
<u>또는 위원회</u> 의 의결로 방송·보도를	
<u>금지시키거나</u>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	
② 의회에서 증언·진술한 증인·참고	
인이 그 사본을 <u>요구한 때에는</u> 의장의	
<u>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</u> 수 있다.	
③ <u>법 제41조제4항</u> 에 따라 서류의 제	
출이나 증언·진술을 하기 위하여 <u>의회</u>	
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	
여는 「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	
<u>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</u> 여비 등 실비를	<u>한 조례」로 정하는 바에 따라</u>
지급한다.	

현 행	개 정 안
	제10조(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) <u>감사나</u> 조사는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
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·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	
장소에서 할 수 있다.	
제11조(공개의 원칙) <u>감사 또는 조사는</u> 공개한다. 다만, 본회의, 감사 또는 조사 <u>위원회</u> 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	
있다.	
제12조(제척과 회피)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<u>기할</u>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	<u>꾀할</u>
사안에 한하여 본회의,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.	사안에 대한 감사나 조사에는
	(2)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
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.	조사를 <u>다른 의원에게</u> 감사하게 하거나 조사하게
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<u>당해</u>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	③ <u>해당</u>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
<u>이를 결정한다.</u>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	<u>에 따른다.</u> ④
	사안에 대하여만 본회의나 감사 또는
	<u></u> .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주의 의무) ① 감사 또는 조사를	제13조(주의 의무) ① 의원은 감사나
<u>할 때에는</u>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	조사를 하려는 때에는
이 현저히 <u>저해되거나</u> 기밀이 누설되지	<u>방해되거나</u>
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	
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	② 의원과 사무보조자 감사나 조사
<u>조사</u> 를 통하여 <u>알게된</u> 비밀을 정당한	알게 된
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	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
제14조(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) ①	제14조(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) ①
본회의,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	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나 조사를
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	끝내면 그 위원회
<u>조사위원회</u> 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	
또는 조사보고서를 <u>지체없이</u> 제출하고	<u>기체 없이</u>
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.	
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	②
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<u>기재하고</u>	<u>적고</u>
그 중요 근거서류를 <u>첨부하여야</u> 한다.	<u>붙여야</u>
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	③ 위원장에게
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	
있다.	
제15조(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)	제15조(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군 또는 해당	② 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군이나
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	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
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	가 있으면 그 시정을 요구하고, 군이나
군 또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	해당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
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 또는	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이나 해당 기관
해당 기관에 이송한다.	으로 이송한다.
	③ <u>제2항에</u>
에 의하여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	
은 사항을 <u>지체없이</u> 처리하고 그 결과	지체 없이
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	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징계)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	제16조(징계)
의원이 제12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	
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,	
제13조에 따른 <u>주의의무에</u> 위반한 때	<u>주의 의무를</u>
에는 법 및 <u>「거창군의회 회의규칙」에</u>	「거창군의회 회의규칙」으로
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.	
제17조(준용규정) 본회의, 감사 또는	제17조(준용규정) <u>감</u> 사 또는 조사위원
조사위원회의 구성, 운영등에 관하여	회의 구성과 운영에
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거	
창군의회 위원회조례」와 「거창군의회	
회의규칙」을 준용한다.	

관계법령

□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09. 4. 1] [법률 제9577호, 2009. 4. 1, 일부개정]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41조(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)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·도에서는 10일의 범위에서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7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,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·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·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·도의회와 시·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회와 시·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-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, 제4항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.
-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7조를 따른다.
-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제4항과 제5항의 선서·증언·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「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2조(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.
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·답변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.

제146조(지방공기업의 설치·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지방공기업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□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[시행 2009.10. 2] [대통령령 제21680호, 2009. 8.13, 일부개정]

제39조(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) ① 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.

- ② 지방의회는 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조사 여부에 관하여 의결을 한다. 지방의회가 폐회 중 또는 휴회 중인 경우 조사의 발의가 있으면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.
- ③ 감사나 조사는 제41조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에 의하여 한다.
- ④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 사무보조가 필요하면 지방의회사 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.

제40조(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)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하거나 소관 상임위 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하게 할 수 있다.

제41조(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) ① 제40조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(이하 "감사 또는 조사위원회"라 한다)는 다음 사항을 적은 감사 또는

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감사나 조사를 한다.

- 1.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편성
- 2. 감사 또는 조사일정
- 3. 감사 또는 조사요령
- 4. 조사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범위
- 5.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
- ② 본회의는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.
- ③ 의장은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제4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 또는 조사를 할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지체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42조(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) ① 감사나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해당 지방자치단체
- 2.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 기관과 법 제117조와 제120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
- 3. 법 제121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·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. 다만, 그 감사 또는 조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되,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수 있다.
- 4.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
- 5. 법 제104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·위탁된 사무(지방자치단체에 위임·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)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. 다만,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.
- 6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. 다만,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·회계·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.
- ②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사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면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할 때에 관계 지방자치단체

의 지방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.

제43조(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)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,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관계되는 자의 출석·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·서류제출일·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,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·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되,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다.
- ⑤ 의장이나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, 선서 전에 의장이나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.
- ⑥ 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「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 8조를 준용한다.

제44조(중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) ① 지방의회에서 증언·진술하는 증인·참고인이 방송·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·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- ② 지방의회에서 증언·진술한 증인·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하면 의장의 승인을 받아 내줄 수 있다.
- ③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·진술을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.

제45조(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)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 되어서는 아니 된다. 제46조(제척과 회피) ① 지방의회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,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.

-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지방의회의원의 감사나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에게 감사하게 하거나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 의원의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.
-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지방의회 의원은 그 사안에 대하여만 본회의,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.

제47조(주의 의무) ①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의회 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48조(공개 원칙) 감사나 조사는 공개한다. 다만,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49조(국가 및 시·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방법 등)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국가사무와 시·도의 사무에 대하여 시·도의회와 시·군 및 자치구의회가 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제39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.

② 법 제41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회나 시·도의회가 감사를 한 지방의회에 필 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그에 따라야 한다.

제50조(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)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끝내면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,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의장은 위원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.

제51조(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) ①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.

- ②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,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52조(운영 규정)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53조(대리 출석·답변의 통지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출석·답변하게 하려면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본회의나 그 위원회의 회의 시작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.

제56조(특별위원회의 설치)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□ 「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10. 3.12] [법률 제10051호, 2010. 3.12, 일부개정]

제7조(중인·감정인의 선서) ①의장 또는 위원장(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의 소위원장 또는 반장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 다)은 증인·감정인에게 증언·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.

②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를 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.

③선서하기 전에 증언·감정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.

제8조(선서의 내용과 방식) ① 제7조에 따라 증인이 선서할 경우 그 선서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.

"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 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"

② 그 밖에 선서의 내용과 방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형사소송법」 제157 조 또는 제170조를 준용한다.

[전문개정 2010.3.12]